# 「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18년 8월 6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3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8년 8월 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주현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
- O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- O 평창군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 나. 주요내용

- O 도시재생 관련업무를 업무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 구성(안 제5조)
-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(안 제6조)
-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7조)
-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수렴, 이견과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(안 제11조)
- O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, 공공기관, 지원센터, 주민협의체, 시민단체, 행정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(안 제12조)
- O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 협정 체결 (안 제13조)

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최순철)

- O 도시재생 뉴딜사업은
  -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, 전국의 500곳에 매년 10조원을 5년간,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절반이상이 1,000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임.
  -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과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공공, 민간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
  -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 외에도 산업 육성, 일자리 창출, 복지 부문까지 포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.
- 정부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를 전국에 68곳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강원도는 4곳(춘천,강릉,동해,태백)이 선정되었음.
-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'도시재생지원센터'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, 강원도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춘천, 원주, 동해, 태백, 정선, 철원으로 총 6개소이며 강원도가 2018. 8월중에 개소예정인 것으로 파악됨.
- '도시재생지원센터'의 설치 방식,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1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며,
- 전국적으로 150개(광역25, 기초125)지자체가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며, 강원도는 도 본청과 시 지역 7개, 군 지역 2 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, 철원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.

- O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  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
  -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
  -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
  -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
  -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
  -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업무
  -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
  -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설립
  -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
  -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.
- 검토결과 정부 및 강원도 권고와 공모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기 위해 근거법령인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, 지원센터 설립, 주민협의체· 추진협의회 구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나,
- 위원회·주민협의체·추진협의회와 기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읍·면 사회단체(번영회 등)와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.
- 또한, 도시재생위원회(군계획위원회) 위원장은 부군수인 반면 실무 협의회인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군수로서 상하관계에 모순된 점에 대하여는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【붙임】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#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주민"이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,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주민협의체"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, 주거환경, 문화,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·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.
  - 3. "사업추진협의회"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, 추진 전략,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.
- 제3조(공동이용 시설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  - 1. 보안 · 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  - 2. 주민운동시설,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
  - 3.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,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

하여 필요한 시설

- 4.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
- 제4조(책무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재생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
  - 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(이하 "주민 제안"이라 한다)의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  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.
- 제6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

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- 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로 정한다.
- 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 -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,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-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센터의 업무)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

각 호와 같다.

- 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
- 2. 주민협의체에 대한 업무지워 및 협력사항
- 3.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
- 4. 빈 점포·상가의 신탁, 공동육아 및 돌봄, 지역축제 등 주민·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·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. 도시재생 관련 홍보
- 6.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
- 제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 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)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, 예산지원의 시기·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

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주민협의체의 설립) ①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 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 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.
  -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.
  -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⑤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, 공공기관, 지원센터, 주민협의체, 시민단체,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(이하 "사업추진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-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- 1.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
    - 2.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

- 3.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
-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,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
-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.
- 제13조(도시재생협정)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 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4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 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원금액의 환수)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:

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× (1+도시 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원래의 대지면적) 이내

- 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
-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